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

2022. 5.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I. 분과위원회 토의 결과 요약

1. ① 소액판결 이유 기재에 관한 토의

■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한 권고¹⁾의 필요성

- 법관이 일정 범위에서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차원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찬성 11인²⁾)
- 소액사건 판결서에 대해서는 ‘...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와 같이 이유 기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가급적 ... 이유 기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이 이유 기재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찬성 9인 / 반대 2인)

■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한 권고의 방식

-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를 어떤 방식으로 권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규[예: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에 관련 문언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위원들 다수가 찬성하였음(예규 삽입 6인 / 대법원규칙 삽입 3인 / 법률 삽입 1인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추상적 권고로 충분 1인)

■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한 권고의 내용

- 소액사건 판결서에 대해서는 이유 불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위원들 대다수

1) 여기서 ‘권고’는 이유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의 용어로서, 이유 기재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화’와는 상반된 개념임

2) 일부 위원은 인적·물적 여건 개선을 전제로 찬성



가 찬성하였음(찬성 9인 / 반대³⁾ 2인)

- 적어도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⁴⁾
 - 상계항변 등 판결의 이유에 의하여 기판력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찬성 10인)
 -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사안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찬성 10인)
 - 그밖에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찬성 9인 / 반대 1인)
-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유는 다음 2가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데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
 - 주문에 인용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찬성 10인 / 반대 1인)
 -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찬성 8인 / 반대 3인)

■ 소결론

- 최종적으로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하여 예규[예: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삽입하는 데 다수가 찬성하였음⁵⁾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에 법원은 판결서의 이유에 주문에 인용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계항변 등 판결의 이유에 의하여 기판력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
2.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사안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3) 이유 기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

4)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이유 불기재 원칙, 예외적인 경우 이유 기재’를 전제로 한 논의로서, 위원 1인은 위 논의에 의견을 밝히지 않음

5)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에 아래 문언을 삽입하는 경우, “... 사건처리의 편의와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그 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된 전문(前文) 역시 “... 사건처리의 편의, 능률 및 충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그 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2. ② 소액판결 이유 기재를 위한 인적(人的) 여건 개선 방안 토의

■ 1안: 소액전담법관의 법관 정원 외 선발

- 입법을 통해 일반 법관과는 임용절차 또는 요건이 구분되는 소액전담법관⁶⁾을 법관 정원 외로 선발함으로써 소액 일반재판부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찬성 8인 / 반대 3인)
- 소액전담법관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찬성 10인 / 반대 1인)
- 소액전담법관의 선발 규모는 추가 연구·검토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는 데 위원들 대다수가 공감하였음(추가 검토 필요 9인 / 100명 미만 1인 / 100명 이상 300명 이하 1인)

■ 2안: 원로법관 제도 확대

- 입법을 통해 법관 정원 외 확충을 전제로 정년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소액 집중심리재판부를 담당하는 원로법관(정년: 만 75세)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찬성 10인 / 반대 1인)
- 법관 정원 외로 두는 원로법관의 수는 100명 미만이 적절하다는 데 위원들 대다수가 공감(100명 미만 8인 / 100명 이상 300명 이하 1인 / 추가 검토 필요 2인)

3. ③ 소액판결 이유 기재를 위한 물적(物的) 여건 개선 방안 토의

■ 1안: 체크식 소장 및 판결서 도입

- 일정 유형 사건(대여금, 임대차보증금, 시효연장, 어음금, 수표금, 물품대금, 금융기관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대리인 포함)에게 요건사실, 관련 증거에 관한 항목을 체크하도록 하는 소장 양식(체크식 소장)을 제공함으로써 법원이 쉽게 보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들 대다수

6) 소액전담법관의 임용절차, 요건을 달리하는 방식으로는 임용을 위한 경력요건(ex. 법학교수도 포함)에 차이를 두는 방식, 임명권자를 달리 하는 방식,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 기간에 차이를 두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호사 자격 미소지자를 소액전담법관으로 임명하는 데에는 분과위원 다수가 반대하였음



가 공감(찬성 8인 / 반대 3인)⁷⁾

- 체크식 소장이 접수된 소액사건에서 법관이 체크식 이유가 첨부된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음(찬성 5인 / 반대 5인)⁸⁾⁹⁾

■ 2안: 판결서 초고 생성 시 청구원인 자동 첨부 방식으로 판결문작성관리 시스템 개선

- 소액사건 판결서의 이유가 생략된 경우에도 소송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관이 소액사건 판결서 초고를 생성할 때 소장 청구원인이 자동 첨부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찬성 11인)

II. 분과위원회 진행 개요

가. 제21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1. 11. 15. 14:40~15:20 (대면회의)

■ 안건 회부

-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이 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회부됨

나. 제2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2021. 12. 20. 15:00~17:00 (원격영상회의)

■ 소액심판 충실화와 관련한 자유토론

7) 적용 유형 및 범위 등 그 구체적 내용은 위원들마다 조금씩 달라 위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금융기관이 원고인 사건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체크식 소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8) 위원 1인은 이 안건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음

9) 체크식 판결서 양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필요



- 소액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기존 논의 검토
- 소액 판결 이유 기재 충실화의 필요성 검토
- 사법자원 확충의 필요성 검토
- 소액심판 실무상 고충 및 개선방안 자유롭게 토론

▣ 향후 계획 수립

- 법관 대상 설문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유 기재 적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다. 제22-1차 회의(이메일회의): 2021. 12. 24.

▣ 구체적인 검토 사항의 확인 및 각 사항에 대한 논의

- 소액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기존 논의 정리
- 소액심판제도 효율화 방식에 대한 그간의 다양한 개선방안 정리
- 소액심판제도 충실화를 위해 소액 판결서 이유 기재 적정화의 필요성 논의

▣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관련 설문조사의 계획

- 충실화 방안 및 이를 위해 도입을 검토할 사항에 관하여 법관 등의 의견청취 필요성 논의
-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논의

라. 제23차 회의: 2022. 1. 17.

▣ 일시 및 장소: 2022. 1. 17. 16:00~18:00 (원격영상회의)

▣ 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논의

- 소액사건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적절히 유형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쟁점이 복잡하거나 양측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집중심리제 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면 좋겠다는 의견



- '소액전담법관' 선발 논의
- 소액사건에서의 참여관 역할 강화

▣ 법관 대상 설문조사 관련 논의

- 회의 전 배부한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관련 법관 대상 설문조사 초안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함 - 문항의 순서 조정, 표현 수정 등
- 일반 국민, 변호사 등 법원 외부의 의견도 들을 별도의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 응답률 등을 고려할 때 먼저 법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일반 국민,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논의하자는 의견
- 2022. 1. 20.까지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의견 취합 후 위원들에 대한 회람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여 법관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함
- 가급적 다음 회의 전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로 함

마. 법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설문기간: 2022. 2. 7. ~ 2. 11.

▣ 대상: 판사(대법원장,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 처·차장 제외)

▣ 총 설문대상자 수: 3,132명

▣ 총 설문 응답자 수: 69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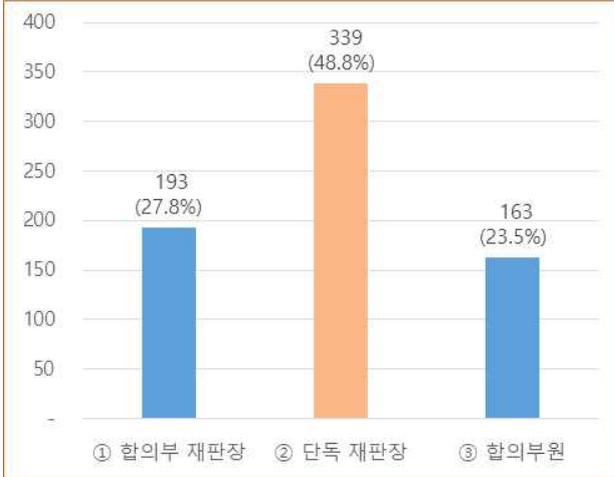
▣ 응답률: 22.2%

▣ 설문 응답자 정보

- 직책: 단독 재판장 339명(48.8%), 합의부 재판장 193명(27.8%), 합의부원 163명(23.5%)
- 소액사건 담당경험: 524명(75.3%)은 소액사건을 담당할 경험이 있음



직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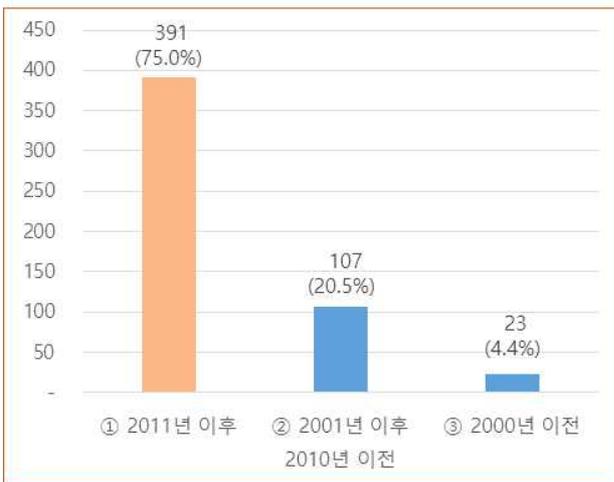


소액사건 담당기간



- 소액사건 담당 시기 및 근무지: 391명(75.0%)이 10년 이내에 소액사건을 담당 한 경험이 있고, 근무지는 서울 본원/수도권 본원 및 지원/지방 본원/지방 지원/시군법원에 고르게 분포함

소액사건 담당 시기



소액사건 근무지(복수선택가능)



바. 제24차 회의: 2022. 3. 21.

■ 일시 및 장소: 2022. 3. 21. 15:00~17:20 (원격영상회의)



■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설명 논의**

■ **이유 기재를 위한 구체적 여건 조성 방안 논의**

● **인적 자원 측면**

- 1안: 소액전담법관의 법관 정원 외 선발
- 2안: 원로법관 제도의 확대
- 3안: 일정 범위 내에서 사법보좌관 등이 관여하되 판사에 의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불복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
- 4안: 필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 **물적 자원 측면**

- 체크식 판결서 도입, 판결서 작성 간소화, 이유 유무에 따라 인지대에 차등을 두는 방안(무이유 소액판결 인지 일부 환급, 판결이유 교부신청 제도 실시), 판결서 초고 작성 시 청구원인이 자동으로 첨부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 등

■ **인적 자원 측면의 여건 조성 방안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1, 2안에는 대체로 공감한 반면, 3, 4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봄**

■ **위원들이 공감한 위 1, 2안과 물적 자원 측면의 여건 조성 방안 중 '체크식 판결서 도입'안에 대해 변호사 대상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사.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설문기간: 2022. 3. 31.(목) ~ 4. 14.(목)**

■ **대상: 변호사**

■ **설문조사 방식: 모아폼(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을 통한 조사**

■ **총 설문대상자 수: 27,444명**

■ **총 설문 응답자 수: 428명**



■ 응답률: 0.15%

아. 제26차 회의: 2022. 5. 16.

■ 일시 및 장소: 2022. 5. 16. 15:00~16:40 (원격영상회의)

■ 분과위원회 논의 및 세부 쟁점에 대한 표결을 거쳐 종합보고서 확정

- 2022. 5. 13. 이메일을 통해 세부 쟁점안(표결사항)을 미리 송부하고 회신을 받은 다음, 이를 바탕으로 2022. 5. 16. 회의에서 표결함

Ⅲ. 논의의 필요성

1.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범위의 확대

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입법취지

■ 민사소송법의 절차상 특례

- 소규모 분쟁에서 변론주의 내지 당사자주의를 수정하고 법원의 후견자적 개입을 도모: 직권증거조사,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당사자신문의 보충성 배제, 강제조정 채택 등
- 민사소송절차가 지향하는 이상인 적정·공평·신속·경제 중 신속성과 경제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재판의 이념 추구: 소송대리인에 관한 특칙, 구술제소와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1회 변론기일 원칙을 위한 지체 없는 소장부분 송달과 답변서 제출 및 기일 전 입증촉구 등 준비명령, 무변론청구기각, 변론갱신절차와 조서 기재 및 판결 이유 기재의 생략, 증인과 감정인의 서면신문에 의한 절차의 경직성 완화 등
-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 선고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음
 -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함

●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 소송촉진과 남상소 방지를 위해 상고 및 재항고 제한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관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음

나. 외국 소액사건 범위

■ 현황

	상한 금액	비고
중국 북경시	31,020위안	약 550만 원
독일	5,000유로	약 670만 원
미국 매사추세츠 주	7,000달러	약 840만 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	10,000달러	약 1,200만 원
프랑스	10,000유로	약 1,300만 원
일본	140만 엔	약 1,600만 원 (그 중 소액소송은 약 700만 원)
싱가포르	당사자 합의시 2만 싱가포르 달러	약 1800만 원
캐나다	25,000캐나다달러	약 2,300만 원
미국 테네시 주	25,000달러	약 3,000만 원

※ 참고

- 독일 및 미국 뉴욕 주의 경우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상한선 없이 소액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
-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에 대하여는 상한선 없이 소액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



다.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범위의 확대

▣ 소액사건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까지로 상향

[표] 소액사건 범위의 변동 내역

연도	1973. 9. 1.	1976. 1. 1.	1980. 2. 1.	1981. 3. 1.	1983. 9. 1.	1987. 9. 1.	1993. 10. 1.	1998. 3. 1.	2017. 1. 1.
최고금액(원)	20만	30만	50만	100만	200만	500만	1,000만	2,000만	3,000만

2. 소액사건 심리 충실화의 필요성

가. 소액사건의 높은 비중

▣ 제1심 민사본안사건 연도별 접수 현황

- 전체 제1심 민사본안 사건 중 약 70% 이상을 차지함

[표] 제1심 민사본안사건 접수 현황 (2015-2019년) / 전국법원(지원 포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액사건	702,273 (69.6%)	686,407 (70.5%)	774,440 (76.2%)	708,760 (74.1%)	681,576 (72.2%)
단독사건	262,099 (26.0%)	246,043 (25.3%)	199,500 (19.6%)	204,297 (21.3%)	215,907 (22.8%)
합의사건	41,579 (4.1%)	37,974 (3.9%)	39,853 (3.9%)	40,755 (4.2%)	43,384 (4.6%)
합계	1,007,966	972,440	1,015,810	955,830	942,886

- 다만, 금융기관 사건 비중도 상당함(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전체 소액사건의 40%이상 정도로 추정됨)

나.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비율이 높음

- ▣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비율이 낮고 당사자 본인 소송이 대부분임



IV. 소액심판제도 충실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 한정된 사법자원으로 인해 소액심판제도 충실화는 소액사건 업무 효율 강화와 직결되므로, **비분쟁성 사건**은 업무처리의 효율 극대화를, **고분쟁성 사건**은 심리의 충실화를 추구함
- (유형별 전문화)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자동차 보험회사 간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사건은 예외적·사후적으로 소 제기됨

1. 비분쟁성 사건 처리의 효율화

가. 독촉절차의 효율성 제고

▣ 사법보좌관의 독촉업무와 소액단독의 금융소액사건업무의 긴밀한 관련성

- 독촉절차에서 쉽게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액사건 수가 급증함

▣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허용

- 2014. 12.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0조의 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신설
-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같이 소송촉진법 제20조의2 제1항에 열거된 채권자는 독촉단계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을 위해 소 제기신청을 하지 않도록 사법보좌관과 미리 협의함
- 2015년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전체 접수 건수가 전년도보다 11.5% 정도 감소
 - 독촉절차로 제기된 금융기관 사건 중 약 82,000건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짐
- 금융사건(금융기관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사건)의 상당수를 지급명령 단계에서 종결함으로써, 법관의 역량을 분쟁성 사건에 집중

▣ 실무상 독촉절차에서 원칙적 특별송달 진행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독촉법원이 공시송달을 하지 못하는 사건도 원칙적으로 특별송달을 거친 경



우에만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회부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소액재판부 실무관의 송달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나. 공시송달과 소장심사단계에서 참여관 역할 강화

▣ 2015. 7. 1.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협업체계 강화

- 한정된 사법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 법원사무관 등에게 공시송달처분 권한 부여(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 권한은 유지하되, 법원사무관 등 참여관이 독자적으로 공시송달 실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소장 또는 항소장 심사 단계의 형식적 보정명령의 일차적 담당

-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99조 제1항, 제400조 제2항, 제402조 제1항

▣ 효과

- 소액사건에서 재판부 참여관의 업무 확대로 법관이 분쟁성 사건의 실체적 심리에 보다 집중하도록 함

다. 사법보좌관 업무에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추가

▣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독촉사건의 지급명령과 유사하므로, 2016. 7. 1. 이후 접수된 비분쟁성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게 함

- 2016. 7. 1. 시행된 개정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 분쟁성 소액사건에 법관의 역량 집중 강화

▣ 이행권고결정 제도 운영 실무

- 소액사건의 소 제기 시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소액사건 심판법상 제도로서, 자백간주로 종결되던 소액사건 대부분이 이행권고결정에



흡수됨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
- ①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
- 이행권고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피고에 대한 송달이 어렵거나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사건, 청구의 일부를 기각할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함
-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소장 접수 후 빠른 시기에 많은 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실무 운영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직 직원들로 구성된 '이행권고계'를 운영하는데, 실무관 1명당 2~3개의 재판부를 담당하여, 보정이 필요 없는 사건은 바로 사법보좌관에게 이행권고결정 결재 요청하고, 보정이 필요한 사건은 재판부 참여관 명의로 보정명령을 함과 동시에 해당 재판부로 인계함
- ○ 기판력이 없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이행권고결정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와 ○ 금융소액사건에서는 공시송달 확정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기판력이 없는 지급명령 내지 이행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병존함

라. 공시송달 요건 완화

- ▣ 증거가 충분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금융소액사건과 원고의 승소가 확실하고 분쟁의 여지가 적은 일반 소액사건에서 공시송달 요건을 완화하여 심사하고 있음



2. 고분쟁성 사건 심리의 충실화

가. 집중심리재판부 운용

1) 소액 집중심리재판부 설치

▣ 소액 일반재판부에서 재배당되는 사건의 유형

- 소액 일반재판부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하여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건들임
- 내용이 어려운 사건: 1) 소액사건이지만 많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 2) 증인신청이나 감정, 검증 등 복잡한 증거절차로 재판 진행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사건, 3) 판례나 선례가 없어 판단이 주저되는 사건, 4) 당사자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 등
- 당사자가 어려운 사건: 1)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 2) 다툼이 심하여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사건, 3)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사건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 집중심리재판부 연혁

- 2012. 9. 10.자 사무분담으로 소액 집중심리재판부 신설하여 일반 소액사건 담당 판사 중 1인이 담당
- 2013. 2. 25. 소액사건 전담법관 2인이 부임함으로써 집중심리재판부를 2개 재판부로 확대
- 2017. 2. 20. 원로법관 3인이 부임함으로써 집중심리재판부가 5개 재판부로 확대
- 2022년 1월 기준 소액사건 전담법관 1인, 원로법관 5인이 총 6개 집중심리재판부 담당

2) 전담법관 제도



▣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

- 2012. 10. 4. 개정 및 시행된 법관인사규칙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둘 수 있게 함
- 이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소액사건 전담법관이 임용됨
- 2015년 이후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민사단독사건 전담법관(소액사건 포함)이 임용되어, 임용 지원 시 희망과 근무할 법원의 상황에 따라 사무분담 정함

[표] 전담법관 현황(2022. 1. 기준)

연번	소속	전담업무	임용일자	비고
1	서울중앙	소액단독	13. 2. 5.	19. 1. 31. 퇴직
2	광주	소액단독		
3	서울중앙	소액단독		
4	서울남부	소액단독	14. 2. 3.	18. 1. 3. 퇴직
5	대구	소액단독		
6	서울동부	소액단독		
7	서울중앙	중액단독	15. 1. 6.	
8	인천	소액단독		
9	대구	민사단독		
10	서울중앙	중액단독	17. 2. 1.	
11	서울중앙	중액단독		
12	서울서부	소액단독		
13	서울중앙	중액단독	18. 2. 1.	
14	수원	민사단독(소액제외), 신청, 강제집행정지		
15	서울중앙	중액단독	19. 2. 1.	
16	수원	민사단독(소액제외), 신청, 강제집행정지		
17	서울서부	민사단독(관련 신청사건 포함)	20. 2. 1.	
18	서울중앙	중액단독		
19	서울북부	소액단독		
20	서울남부	민사단독, 재정단독, 약식명령	21. 2. 21.	

3) 원로법관 제도

▣ 원로법관의 소액사건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 2017년부터 원로법관이 지명되어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11인의 원로법관이 소액업무(집중심리재판부) 전담
- 서울중앙 5인, 광주시법원 1인, 여수시법원 1인, 파주시법원 1인, 남양주시법원 1인, 광명시법원 1인, 익산시법원 1인



4) 집중심리재판부 운용을 통한 사법부의 업무역량 강화

- 경력이 풍부한 전담법관, 원로법관이 분쟁성 소액사건을 담당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임
- 중액단독에서 하는 정도의 방식으로 충실히 심리함
- 모든 사건이 다투는 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의 판결서에 간략하게라도 이유를 기재함
- 소액 일반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간이한 사건의 처리에 집중함

5) 집중심리재판부의 성과

■ 소액 일반재판부와와의 비교

-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도가 높아짐
- 일반재판부는 감정, 검증, 증인신문 신청이 있는 경우 집중심리부로 재배당함

■ 민사단독 실질판결(판결건수 -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사건 처리와의 비교

- 고분쟁성 사건만 재배당 받는 소액 집중심리재판부의 항소율은 “제1심 민사단독 실질판결(= 전체판결-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 판결) 선고사건” 항소율의 약 2배에 달함

[표] 제1심 민사단독 실질판결 선고사건 항소율 및 소액 집중심리부 항소율 비교

	2018. 3.~2019. 2	2019. 3.~2020. 2	2020. 3.~2021. 2	2021. 3.~2021. 12
1심 민사단독 실질판결사건	20%	19%	18%	18%
집중심리부	42%	40%	35%	36%

- 2021년 12월 기준 소액 집중심리부의 미제건수는 평균 329건(재판부당 240건 ~ 556건의 분포를 보임)이고, 2021. 3.부터 2021. 12.까지의 월평균 처리건수는 51건에 달함

6) 한계



- 집중심리재판부가 일부 법원에만 설치되어 효과가 제한적임
- 전담법관에게 **법조경력 20년 이상**을 요구하여 자원하는 인력이 제한적임
- 원로법관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지명되어(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 정년(65세)까지 남은 임기가 길지 않음
- 원로법관과 전담법관 모두 법관 정원에 포함되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므로, 법관 정원에서 제외하고 정년을 연장하여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집중심리재판부를 신설하면서 일반재판부를 줄일 경우 일반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 수가 오히려 증가하게 됨
 - 인천지법에서는 2019년 8월 소액 재판부별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해 집중심리재판부를 폐지하였음
- 민사 중액단독사건과 비교할 때 집중심리재판부사건은 모두 다투는 사건인데도 난이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중액사건 판결 이유 기재 정도로 이유를 기재하기 어려움

나. 조정활성화 방안 도입

1) 소액사건 전담조정위원 제도 운영

▣ 조정전담부 조기조정 실시

- 소 제기 후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이용하여 조정전담부에 조기조정 회부
- 각 법원별로 전담조정위원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한계

-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상당함

2) 즉일조정 실시



- 변론기일 당일 즉일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위원들이 조정 실시
- 변론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도가 크고 조정성립율도 높은 편임

3. 자동차 보험회사 간 분쟁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청구 전치주의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설치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체결되고 개정된 것)에 따라, 위 협정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금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의결기관인 심의위원회를 둠
- 심의청구 전치 의무: 협정회사는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제소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하지 아니함
-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로서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심의위원회는 소심의위원회(위원 1명)와 재심의위원회(위원 4명)로 이루어져서, 심의위원회 내에서 재심의 청구도 가능함

■ 확정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의 효력

- 부제소합의까지 성립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나,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이고 이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함¹⁰⁾ ▶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확정 시 소 제기할 실익 없음
-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당사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분쟁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결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

V. 현행 소액심판의 실무상 문제점

10)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1. 당사자 입장에서의 문제점

가. 심리 관련

- 일반 사건의 경우에도 한 기일에 진행되는 사건이 100~200건에 달하므로 사건 당 할애되는 재판 시간이 짧아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을 충분히 심리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쉬움

나. 판결서 답변기능 실질화 관련

- 당사자가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는데 판결서에 이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알 수 없어 판결의 결론을 이해하기 어려워 판결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상소 의사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 1심의 판결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 상고가 제한된 소액 사건이 사실상 항소심만으로 실질적 재판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법관 입장에서의 문제점

가. 1심(소액 재판부) 관련

- 절대적인 사건 수가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소장접수 단계부터 판결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음에도 사건처리에 다음과 같은 난점이 존재
 - ① 소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피고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아 첫 기일 지정에 상당한 시간 소요
 - ②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정, 증거 제출 촉구에 관한 석명준비명령 미이행



- ③ (금융사건의 경우) 재판당일까지 수십~수백건에 이르는 증거제출 지연
- ④ 기일에 진행해야 하는 사건 수가 과도하게 많아 사건 당 충실한 심리가 어렵고, 절차에 불만족한 당사자의 돌발 행동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⑤ 판결문 생성, 편집완료, 등록 등 각 단계의 프로그램 로딩에만도 수십분 ~ 수 시간에 이르는 시간 소요
- ⑥ 협업하는 재판부 구성원에 대한 업무 처리 의존도가 높음으로 인한 위험부담 등의 어려움이 존재함
- **소액사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쟁점이나 다툼의 정도가 일반 민사사건(중액사건)과 다르지 않아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심리하기에 부적당한 사건이 많아짐
- **소액사건에서 비중이 높은 당사자 본인 소송의 경우** 장황한 구술변론과 재판장이 모두 알아서 재판해 달라고 하는 데 따른 심리의 어려움

나. 항소심 관련

- 항소심 법관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정리된 1심 판결서를 통해 사안을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임
- 이유 미기재로 인해 원판결이 어떠한 이유로 결론을 도출하였는지 알 수 없는 소액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이 항소심의 적정한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음

VI.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논의

1.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즉일선고를 하지 않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 당사자들이 보통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판결 이유를 고지받지 못하게 됨

2. 판결서 이유 불기재에 대한 논의

가.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의 효용

- 사법정책연구원이 2016. 6. 24.부터 2016. 7. 1.까지 전국의 민사소액 담당법관 1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소액재판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절차 또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63.1%(70명)의 법관들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이라고 답변함

나. 소액사건 범위 확장 이후 법원의 구체적 대응

■ 소액재판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2017. 6. 30.)

- ① 간이절차의 효율성 강화 측면(이행권고결정, 금융소액사건, 공시송달요건 판단 관련)과 ② 고분쟁성 소액사건의 충실화(소액사건 판결서 답변기능 강화방안 및 서울중앙지법 소액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현황) 측면으로 나누어,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1심 지방법원 및 지원(시군법원 포함) 소속 법관 29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의견 청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여 답변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① 상계상변이 제출되는 등 기관력이 미치는 경우



- ②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는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특히 계, 동업, 계속 정산이 이루어지는 물품거래 사건 등)
- ③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경우
- ④ 계산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손해배상 사건 등)
- ⑤ 사안이 특히 복잡한 경우
- ⑥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요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거나 항변이 배척되는 등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이 특히 필요한 경우

■ 소액재판실무편람의 전면 개정(2017. 12. 31.발간)

- 2017년 「소액재판실무편람」을 전면 개정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판결서의 이유에 ① 주문에 인용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②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의 판단요지 등을 간략하게 기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 ① 상계항변 등 판결의 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
 - ②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사안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그 밖에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다. 소액사건 범위 확장 이후 비판 강화

■ 최근 법원 외부의 비판

- 이유 기재가 생략된 판결서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및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적으로 제기됨
 - 2021. 6. 14.자 언론보도 「3천만 원이 소액?...이유도 안 나오는 '두 줄' 판결」
 - 2021. 11. 30.자 언론보도 「판사님은 3000만 원이 소액인가요.. 판결 이유



한 줄 없는 소액사건」

- 2021년 서울지방법원소액재판부는 민사소액재판에 있어 쟁점이 많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이나 쌍방 모두 변호사 소송대리인이 존재하는 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 내부적으로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요청함

■ 최근 법원 내부의 의견

- 2021. 5. 24. 전국 법관 간담회(법관 55명이 온라인회의 접속)에서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쟁점이 복잡하고 다투는 사건의 경우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도록 권고하거나 강제할 필요가 있고, 소액사건의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으로 상향 시 이유 불기재로 인한 비판이 많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추가 논의는 없었으나 위 발언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음(대체로 위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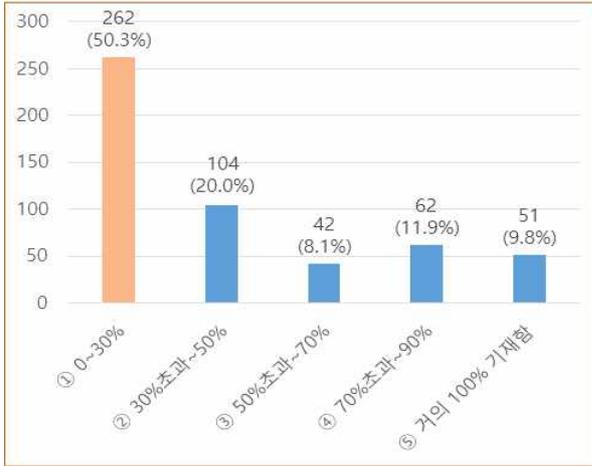
3. 판결서 이유 기재 현황에 대한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실질판결(= 자백간주·공시송달판결을 제외한 판결)의 이유 기재 비율

- 소액재판부당 월별 평균 실질판결건수(= 전체판결건수 - 자백간주·공시송달판결건수)는 2021년 기준으로 전국 법원(지원 포함)의 경우 60건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04건에 달함
- 응답자의 절반 이상(50.3%)은 실질판결건수의 30%이하에 해당하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답변함
- 실질판결건수의 50%를 초과하여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도 약 30%에 달함



소액사건 실질판결 이유기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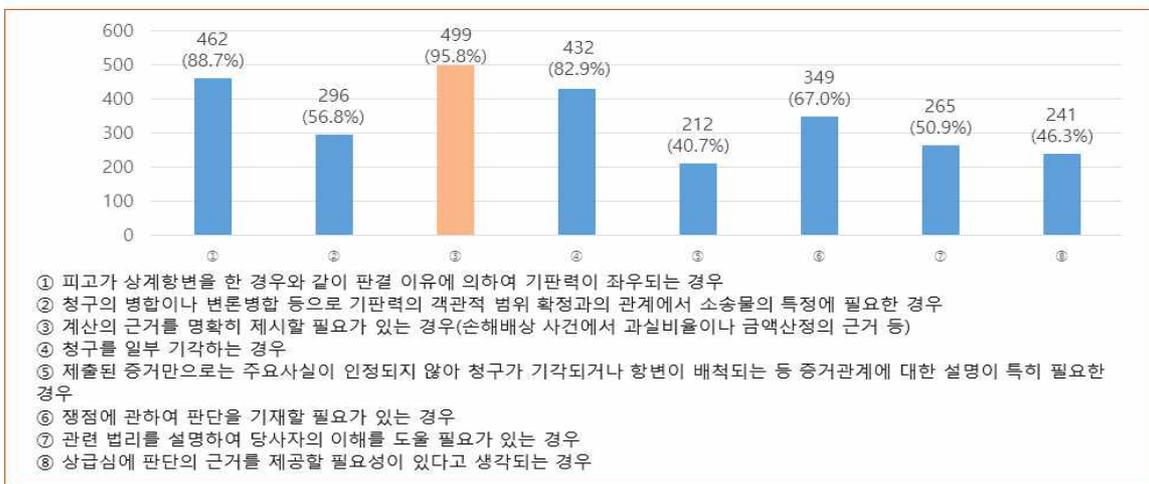
참고 : 소액재판부당 월별 '실질판결건수'
(=전체판결건수-자백간주·공시송달)

	2019년	2020년	2021년
전국 법원 (지원 포함)	56건	56건	60건
서울중앙지방법원	88건	95건	104건

■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 기재의 정도

- 이유 기재의 방식은 서술식에 한하지 않고 개조식도 포함함
- 상계항변 등 기판력이 좌우되는 경우(88.7%), 계산의 근거(손해배상 사건의 과실 비율이나 금액계산의 근거 등)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95.8%), 일부 청구 기각의 경우(82.9%) 대부분 이유를 기재하고 있음
-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67%)에도 다수의 응답자가 이유를 기재하고 있음

판결서 이유(서술식·개조식 모두 포함)를 기재한 경우 (복수응답)





4. 필수적 이유 기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논의

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 관련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개정법률안

▣ 이정문 의원 대표 발의안, 2102482호

-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을 삭제하는 안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판결서 작성

▣ 최기상 의원 대표 발의안, 2111812호

-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하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변론 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등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11조의2 제3항을 개정하는 안 ▶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의 기준과 같이 간략한 방법으로 판결서 작성

나. 필수적 이유 기재에 대한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에 대한 공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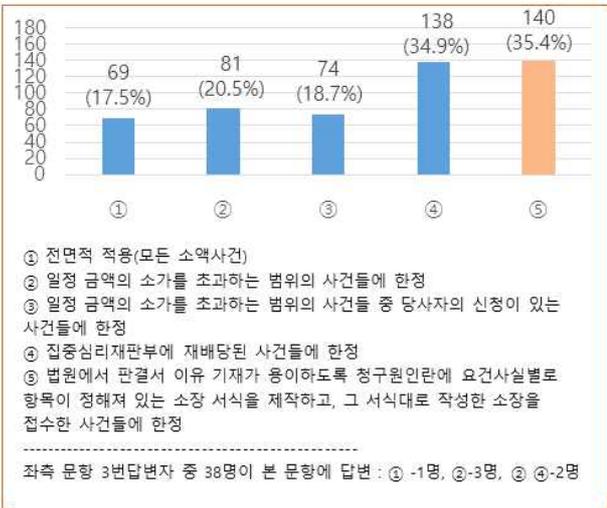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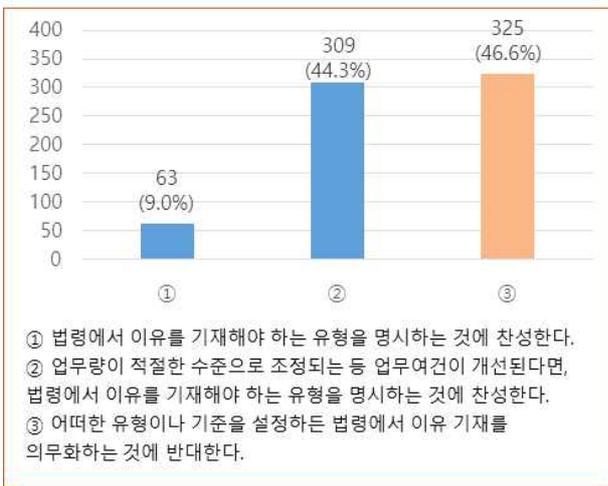
- 일정 유형의 필수적 이유 기재를 법령에서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응답이 9%, 업무량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되는 등 업무여건이 개선된다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44.3%로, 응답한 법관의 과반(53.3%)이 이유 기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다만, 이유 기재를 모든 소액사건에 전면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은 17.5%에 불과하고, 일정금액의 소가를 초과하는 범위의 사건들(39.2%), 집중심리재판부에 재배당된 사건들(34.9%), 미리 법원에서 배부한 서식대로 소장을 접수한 사건들(35.4%)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함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유형을 법령에서 명시하는 것에 대한 입장

(좌측 문항에 대하여 1, 2선택한 경우)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유형을 법령에서 명시한다면 적절한 적용대상(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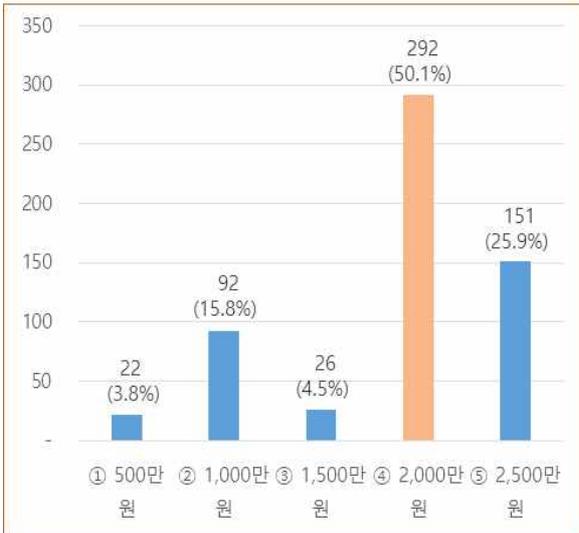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이유를 기재할 경우 적정 기준액

-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넘는 사건에 대해 이유를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한다면, 2017년 이전의 소액사건 소송목적의 값의 최고액인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 정도(50.1%)에 해당하였음
- 이에 따를 경우 일정 유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사건의 비율은 약 7% 정도에 해당함
- 이에 대하여, 소가를 기준으로 하면 소가를 부풀리는 사례가 예상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유형을 법령에서 명시한다면 적절한 적용대상 문항의 예시2와 같이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사건에 대해 이유를 의무화한다면 적정 기준액



참고 : 소액사건 소가별 접수 건수 - 전국법원(지방법원,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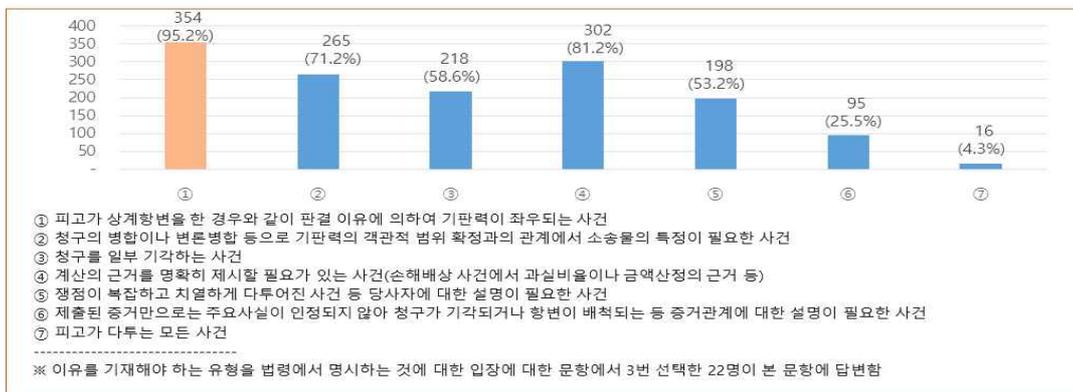
참고: 소액사건 소가별 접수 건수 - 전국 법원(지방법원, 지원)						
	500만원 이내	1,000만원 이내	1,500만원 이내	2,000만원 이내	2,500만원 이내	3,000만원 이내
2019년	369,916 60.3%	115,486 18.8%	51,033 8.3%	36,038 5.9%	20,125 3.3%	19,608 3.2%
2020년	343,836 59.4%	110,322 19.0%	49,784 8.6%	34,381 5.9%	20,232 3.5%	19,245 3.3%
2021년	289,026 59.2%	91,900 18.8%	41,871 8.6%	29,547 6.1%	17,258 3.5%	17,404 3.6%

다. 이유 기재 범위에 대한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유를 기재할 필요성이 있는 유형

- ① 상계항변 등 기판력이 좌우되는 사건(95.2%), ② 청구의 병합 등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을 위해 소송물 특정이 필요한 사건(71.2%), ③ 과실비율이나 금액산정의 근거 등 계산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사건(81.2%) 등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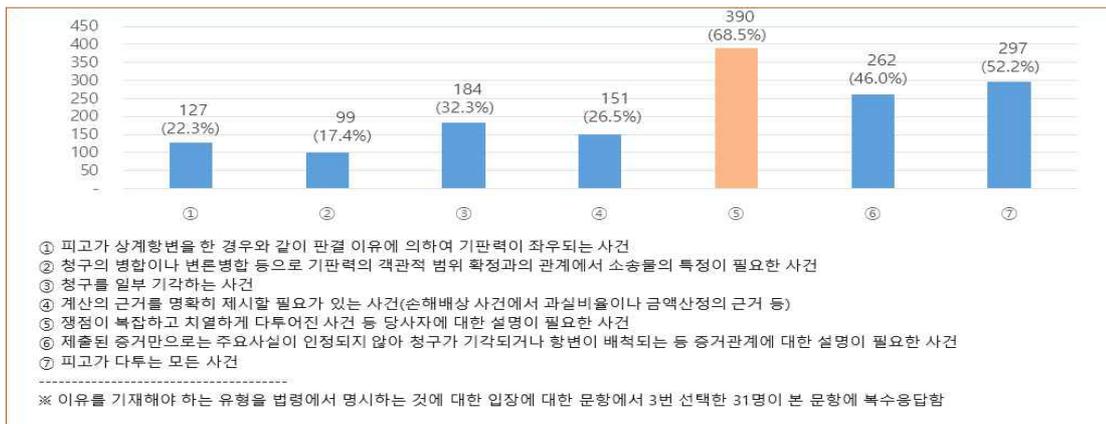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유형을 법령에서 명시하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한 문항에서 1, 2선택한 경우)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유형을 법령에서 명시한다면 적절한 **사건유형**(복수응답 가능)





-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도 응답한 법관의 절반 이상(53.2%)이 이유 기재가 필요하다고 보아 판결서의 실질적 응답기능에 주목하였음
-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건” 유형은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 업무량 과중이 가장 우려되는 유형 (68.5%)이기도 함
- 위 「이유를 기재할 필요성이 있는 유형」 문항에서 높은 비율로 응답된 “상계 항변 등 기판력이 좌우되는 사건”, “청구의 병합 등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을 위해 소송물 특정이 필요한 사건”, “과실비율이나 금액산정의 근거 등 계산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사건” 유형에서 이유 기재 시 그로 인한 업무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응답됨(각각 22.3%, 17.4%, 26.5%)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유형을 법령에서 명시하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한 문항에서 1, 2선택한 경우)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 **업무량 과중**(복수응답 가능)



라. 필수적 이유 기재에 반대하는 입장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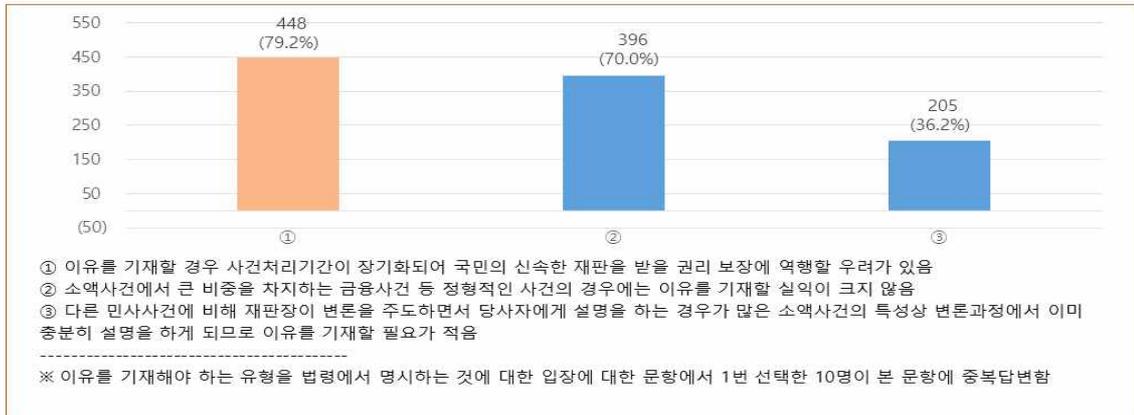
▣ 업무량 증가로 인한 사건처리기간의 장기화 예상

- 한편, 필수적 이유 기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업무량 증가로 인한 사건처리기간의 장기화(79.2%)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 이는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추구하는 소액사건 절차와 맞지 않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에 역행할 우려가 있음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유형을 법령에서 명시하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한 문항에서 2, 3 선택한 경우) 소액사건 판결서에 현재보다 이유를 더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가능)



- 이유 기재를 의무화하게 되는 경우 판결 선고 건수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고(5.2%), 나머지 대다수는 판결 선고 건수를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함

일정 범위·유형의 사건들에 대해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면 현재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판결 선고 건수의 변동 범위는



▣ **이유 기재가 불필요한 경우도 상당 비중을 차지함**

- 소액사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사건 등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이
 유 기재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향후 이유 기재가 의무화되더라도 이 부분



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재판장이 변론을 주도하면서 석명준비명령을 발령하거나 변론 과정에서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도 많음
- 이미 실무상 이유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하게라도 이를 기재하고 있는데, 원칙적·필수적 이유 기재를 법령에서 명시할 경우 한 기일에 백 건에서 수백 건 내지 천여 건을 상회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유 기재 누락’을 이유로 한 항소가 빈번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됨

5. 이유 기재에 관한 위원회 표결 결과

▣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한 권고¹¹⁾ 필요

-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의 필요성: 법관이 일정 범위에서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차원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위원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찬성 11인¹²⁾)
- 결의의 강도: 소액사건 판결서에 대해서는 ‘...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와 같이 이유 기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가급적 ... 이유 기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이 이유 기재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찬성 9인 / 반대 2인)

▣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한 권고의 방식 ⇨ 예규

- 이유 기재 권고 형식: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를 어떤 방식으로 권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규[예: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에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위원들 다수가 찬성하였음(예규 삽입 6인 / 대법원규칙 삽입 3인 / 법률 삽입 1인 /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추상적인 권고로 충분 1인)

11) 여기서 ‘권고’는 이유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의 용어로서, 이유 기재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화’와는 상반된 개념임

12) 일부 위원은 인적·물적 여건 개선을 전제로 찬성



▣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한 권고의 내용

- **이유 기재를 원칙으로 할 것인지 여부:** 소액사건 판결서에 대해서는 이유 불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찬성 9인 / 반대¹³⁾ 2인)
- **이유를 예외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경우:** 적어도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¹⁴⁾
 - 상계항변 등 판결의 이유에 의하여 기판력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찬성 10인)
 -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사안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찬성 10인)
 - 그밖에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찬성 9인 / 반대 1인)
- **이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유는 다음 2가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데 위원들 대다수가 찬성하였음
 - 주문에 인용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찬성 10인 / 반대 1인)
 -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찬성 8인 / 반대 3인)

▣ 소결론

- 최종적으로 소액사건 판결서 이유 기재에 관하여 예규[예: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삽입하는 데 다수가 찬성하였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경우에 법원은 판결서의 이유에 주문에 인용된 청구를 특

13) 이유 기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

14)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이유 불기재 원칙, 예외적인 경우 이유 기재’를 전제로 한 논의로서, 위원 1인은 위 논의에 의견을 밝히지 않음



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요지를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계항변 등 판결의 이유에 의하여 기판력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
2.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사안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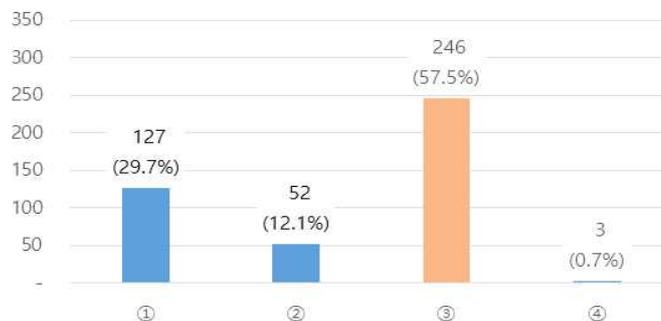
Ⅶ. 이유 기재를 위한 인적·물적 여건 개선 방안 논의

1. 소액 재판부 업무 여건 개선에 대한 요청

▣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현재 상황에서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 기재를 통한 판결서의 답변가능 충실화”와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추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우선하기보다는, 양자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법원의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57.5%)을 차지함

소액사건 심판에 있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 ① 쟁점에 대한 이유가 기재되어 판결서의 답변가능을 보다 충실화하는 것
- ② 간이·신속한 소액사건처리로 인한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추구
- ③ 위 ①, ②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법원의 여건 개선이 필요함
- ④ 기타



2. 구체적인 여건 조성 방안

가. 인적 여건 측면

▣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의견

- 소액사건 판결에 현재보다 더 이유를 기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안으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법관 확충(85.2%)** 항목에 응답하였고, **필수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46.7%)**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법보좌관 등 독촉계·이행권고계의 비법관 인력 **확충(35.3%)** 및 재판연구원 **배정(23%)** 항목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임 - 분쟁성 사건을 담당하는 인력을 **대폭 확충**하지 않는 한 어떠한 해결방안도 있을 수 없어 보임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복잡한 사건 내지는 고분쟁성 사건은 '집중심리재판부'나 '집중심리재판부가 없는 법원에서는 중액단독'으로 재판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함
- 참여관의 소장심사업무를 강화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정리된 소장이 제출되게 함

▣ [1안] 소액전담법관의 법관 정원 외 선발 방안

- 개요
 - 입법을 통해 현재의 전담법관 제도와 같이 엄격한 자격요건 및 임용시험이 아닌, 일반 법관과는 임용절차 또는 요건이 구분되는 소액전담법관을 법관 정원 외로 선발함으로써 소액재판부(일반재판부)를 대폭 확충하여 사건당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여건을 조성함
- 소액전담법관 임용절차 또는 요건의 예시
 - 1안: 자격요건 완화(변호사 자격 소지자뿐 아니라, 법원 직원, 일정 규모 이상 대학의 법학 대학교수 등. 단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보다 업무경력 요건 가중)¹⁵⁾



- 2안: 임명권자 차이(일반 법관과 달리 법원이 임명)¹⁶⁾
- 3안: 경력요건 완화(일반 법관 경력요건인 법조경력 10년보다 완화한 법조 경력을 요구하되, 임기도 일반 법관보다 단기로 정함)

● 필요성

- 법관 정원 외 선발을 통하지 않으면 한정된 사법자원으로는 소액재판부(일반재판부)의 대폭 확충이 불가능함
- 소액재판부(일반재판부)의 대폭 확충은 집중심리재판부 확대를 위한 필수적 선행조치임 - 소액재판부(일반재판부)는 한정되어 있는데 집중심리재판부를 신설하면 일반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 수가 늘어남

● 법관 /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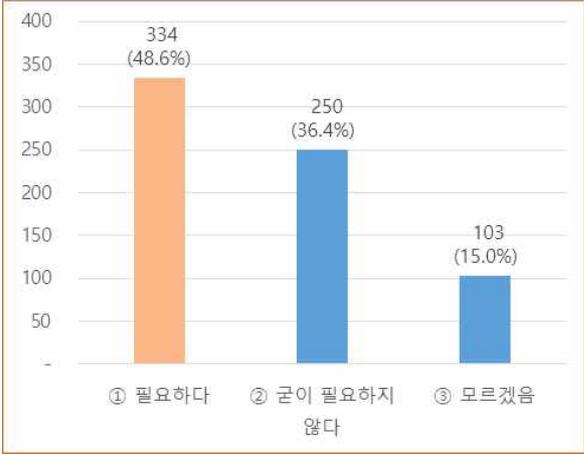
-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소액전담법관 추가 선발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가량(48.6%)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소액전담법관의 최소 법조경력 은 현재와 달리 10년 이상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과반(51.4%)을 차지함
- 법관 대상 설문조사에서 소액전담법관이 배치될 필요가 있는 대상 법원에 대하여, 응답자의 33%가 전국본원에, 23.8%가 전국 본원 및 지원에, 20.9%가 전국 본원 및 일부 지원에, 11.8%가 수도권 및 일부 본원에, 10.6%가 수도권 본원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서울 및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15) 다만, 변호사자격 미소지자가 소액전담 판사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안(1안)에 대해 다수 위원이 반대함. 변호사 위원 2인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또 다른 경로의 법조인 선발제도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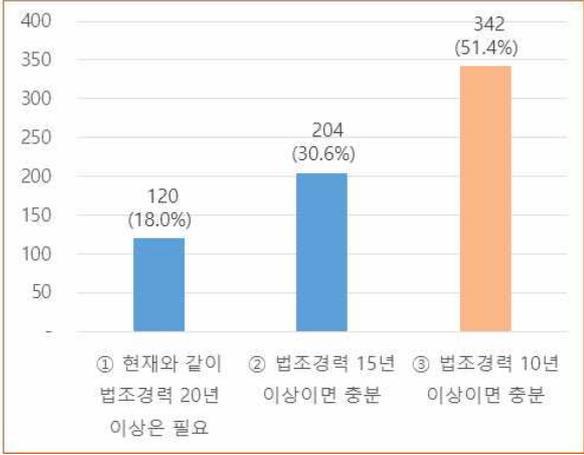
16) 미국 연방법원의 경우 판사(Judge)는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나, 치안판사(Magistrate Judge)는 각 지방법원의 판사회회에 의해 임명되고 재임용됨



소액전담법관 추가 선발 필요성



현재 민사(중액·소액) 전담법관의 최소 법조경력은 20년 이상임. '소액전담법관' 최소법정경력에 대한 의견



- 다만, 기존 전담법관에 비해 완화된 법조경력을 요구할 것이므로, 신설되는 소액전담법관이 기존의 전담법관 제도와 마찬가지로 임용 법원에 계속 재직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법관과의 형평성, 장기 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단 방지 등을 고려하여 순환근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법관 정원 외 소액전담법관 선발에 대해 응답자의 다수(74.5%)가 찬성하였고, 소액사건 담당 법관 및 재판부의 확충이 해결책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됨

입법을 통해 현재의 전담법관 제도(법조 경력 20년 요건)와 달리 외국의 간이판사, 치안판사처럼 자격요건이 완화된 "소액전담법관"을 법관 정원 외로 임용함으로써 소액재판부(일반재판부)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소액전담법관의 정원 외 선발에 관한 위원회 표결 결과

- 제도 도입: 찬성 8인 / 반대 3인
- 소액전담법관의 자격요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만 허용(찬성 10인 / 비변호사도 허용 1인)
- 선발 규모: 위원들 대다수가 선발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음(9인 / 100명 미만이 적절하다는 의견 1인 / 100명 이상 300명 이하가 적절하다는 의견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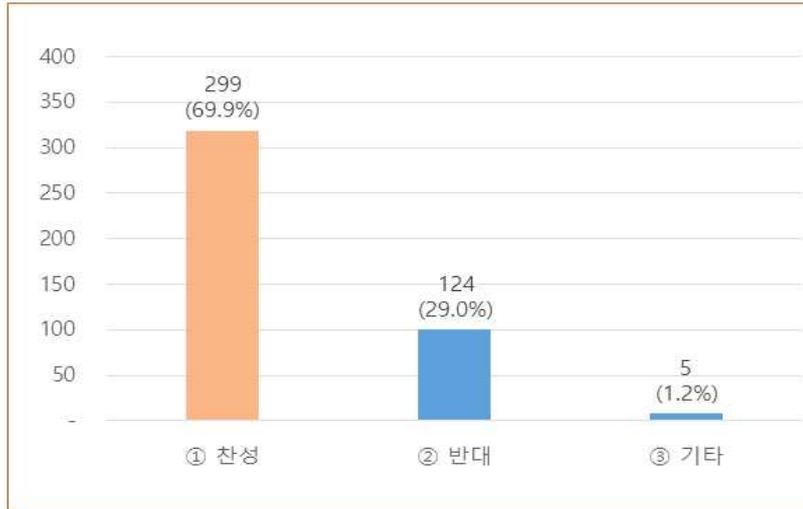
- [2안] 원로법관 제도의 확대

- 개요

- 입법을 통해 법관 정원 외 확충을 전제로 정년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집중심리재판부를 담당하는 원로법관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판사 중에서 지명되는 현재의 원로법관 제도(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로는 정년(65세)까지 남은 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정년을 75세로 하되, 업무량과 보수는 적절히 조정하는 방식의 원로법관 제도 입법을 요청함(2019년 원로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됨)
- 경험이 풍부한 법관이 소액심판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판결을 한다면 간략한 이유 기재보다 더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다수(69.9%)가 원로법관 제도 확대를 통한 집중심리재판부 확충안에 대해 찬성함
 - 원로법관 제도 확대 시 집중심리재판부의 운영 취지에 따라 1차 변론기일 종결을 지양하고 충실한 심리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음



입법을 통해 법관 정원 외 확충을 전제로 정년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소액 집중심리재판부를 담당하는 “원로법관”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 원로법관 제도 확대에 관한 위원회 표결 결과

- 제도 도입: 찬성 10인 / 반대 1인
- 확대 규모: 100명 미만(8인 / 100명 이상 300명 이하 의견 1인 / 추가 검토 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2인)

▣ [3안] 일정 범위 내에서는 사법보좌관 등 비법관 인력이 실질적으로 담당 하되 판사에게 불복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

● 개요

- 입법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는 사법보좌관 등 비법관 인력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되 판사에게 불복권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함

● 한계

-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 우리나라는 신분이 보장된 정식 법관이 소액사건 재판을 해야 함(cf. 외국 입법례의 경우 정식 법관이 아니더라도 일정 자격을 소지한 경우 약 500~1600만 원 상한의 소액 재판을 담당하기도 함)



- **비법관 인력 활용에 관한 위원회 논의 결과**

- 헌법상 한계로 인해 위원회 표결에 부치지 아니함

- **[4안] 필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 **개요**

- 당사자들이 조정 회부를 원치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필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으로 조정을 거치도록 함
- 신속성과 경제성이라는 소액심판의 이념에 부합함
- 위 3안의 보충안으로서 비법관 인력이 소액사건을 일차적으로 담당할 수 있음. 가사사건에서 가사조사관의 쟁점정리, 증거제출 방안 등을 참조하여 시행하면 도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가사사건의 경우 원칙적 조정회부를 하고 있음
- 독일의 '중간재판'처럼 이 절차에서 제출한 증거만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강제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필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위원회 논의 결과**

- 당사자 및 변호사의 조정 회부를 원치 않는 경향,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위원회 표결에 부치지 아니함

나. 물적 여건 측면

- **[1안] 체크식 소장·판결서 도입 방안**

- **개요**

- 일정 유형(물품대금, 어음금, 수표금, 대여금, 금융기관 양수금, 시효연장, 임대차보증금, 임금, 구상금, 영조물 하자 책임, 약정금 등)의 경우 소장 접수 단계부터 요건사실별로 항목을 체크하는 양식의 소장을 받고, 다툼 경우 요건사실별로 명시적인 증거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표준화 작업을 통해 판결서에서 체크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안



<체크식 판결서 양식 예시>

이 유(인용, 기각, 일부 인용, 각하)

증거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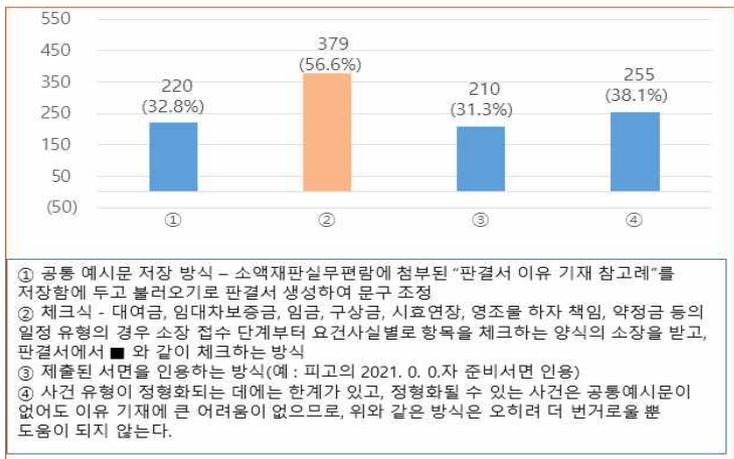
법리 판단(임대차보호법 제22조 위반, 소멸시효, 보증인의 책임, 중복소송 금지 위반, 관할위반 등)

기타(이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

●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러한 체크식 소장·판결서 도입 방안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56.6%)에 달했으나, 사건을 유형화하여 기준으로 세우는 방안은 실무상 효율적이지도 않고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이 체크식 이유가 첨부된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됨
- 위와 같은 프로그램 이용보다는 판결서 작성 간소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유를 개조식이나 3~5줄 정도로라도 간략히 작성하는 실무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물적자원 측면) 이유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항목(복수응답 가능)



좌측 문항 2번에서 와 같이 체크하는 방식' 기재례



이 유(인용, 기각, 일부 인용, 각하)

증거 부족

법리 판단(임대차보호법 제22조 위반, 소멸시효, 보증인의 책임, 중복소송 금지 위반, 관할위반 등)

기타(이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

- 이와 별도로, 법관 대상 설문조사에서 “이유 없는 소액판결의 인지 일부 (30% 정도) 환급 제도”와 “판결 이유 교부신청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이유



없는 소액판결 선고 후 1주 이내에 당사자가 인지환급청구권 포기서(원고의 경우) 또는 소장 인지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인지(피고의 경우)를 붙여서 판결 이유 교부 신청을 하면 이유를 교부하고, 이를 기존의 이유 없는 판결서와 함께 하나의 판결로 간주하자는 의견이 제안됨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의 과반(56.3%)이 일정 유형(대여금, 임대차보증금, 임금, 구상금, 시효연장, 영조물 하자 책임 등)의 소액사건에서 체크식 소장·판결서 도입에 찬성함
- ○ 법적지식이 부족한 당사자 본인 소송을 하는 경우 유형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 변호사 소송대리 확대, 소액사건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소송구조 제도 확대 활용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 ○ 유형화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 ○ 체크뿐 아니라 간단한 이유 기재도 필요하다는 의견, ○ 소장은 체크식을 따르더라도 판결서도 이와 같다면 이유 기재가 부실해지고 고지서와 같은 외양으로 말미암아 판결의 권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 등의 기타 의견이 있었음

● 검토

- 체크식 소장·판결서 도입이 가능한 사건 유형 및 체크 항목에 대한 추가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구술로도 소 제기가 가능한 소액사건의 특성상 체크식 소장 양식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금융사건에서 미체크(증거 미첨부) 항목에 대해 참여관 보정명령을



통해 보정한 다음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음

● **체크식 소장 및 판결서 도입에 관한 위원회 표결 결과**

- 체크식 소장 도입: 찬성 8인 / 반대 3인
- 체크식 판결서 도입: 찬성 5인 / 반대 5인 / 기권 1인

■ **[2안] 판결문 초고 생성 시 청구원인 자동 첨부 방안**

● **개요**

- 소액사건 판결서 초고 생성 시 소장의 청구원인이 자동으로 첨부되도록 판결문작성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 소액사건 판결 선고 후 일부 변제 등이 있었는데 일정기간 경과로 소액사건 기록이 파기되면 판결서 주문만으로는 소송물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판결서에 청구원인을 첨부함으로써 기관력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함
- 부속실 행정관이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전부인용 소액사건 판결서 초고를 생성, 편집 후 법관에게 인계하는 현행 협업 체계상 법원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함

● **청구원인 자동 첨부에 관한 위원회 표결 결과**

- 전원(11인) 찬성

다. 시행가능성 및 시행시기

- **인적여건 개선방안 1, 2안은 추가 검토 후 입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물적여건 개선방안 1안도 실시를 위해 추가 검토가 요구되며, 물적여건 개선방안 2안은 즉시 시행 가능함**